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
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월 4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4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관련 [별표2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원표> 중
<국 단위 직급별 정원표>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합계 중 사무국의 '22' 를 '23' 으로 하고, 청소년수련관의 '21' 을 '20' 으로 한다.
- 일반직 계 중 사무국의 '21' 을 '22' 로 하고, 청소년수련관의 '21' 을 '20' 으로 한다.
- 6급의 소계 중 사무국의 '4' 를 '5' 로 하고, 청소년수련관 '5' 를 '4' 로 하며,
기술 중 사무국 '1' 을 '2' 로, 청소년수련관 '1' 을 삭제한다.

제5조 제1항 관련 [별표2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정원표> 중
<팀 단위 직급별 정원표>를 삭제한다.

제5조 제2항 관련 [별표3] <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팀별 업무분장표>를
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ESG전략기획팀 업무분장 중 '모두누림센터 전산관리, 재단 홈페이지 관리' 를
'재단 전산·홈페이지 관리' 로 변경한다.

- 스포츠운영팀의 ‘스포츠과학센터 운영’ 을 삭제한다.
- 특화사업팀의 ‘이동형 청소년센터 구축 및 운영’ 을 삭제하고,
‘청소년놀터 운영’ 을 추가한다.
- 청소년교육팀의 ‘유엔아이센터 전산 관리’ 를 삭제하고 ‘빙상장 정빙관리’
를 추가하며 시설관리팀의 ‘빙상장 정빙관리’ 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